

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

수험번호		지원학과	_____과
성명		생년월일	____년 ____월 ____일

	유형 구분	해당 유형	지 원 자 격
지원 자격 확인	1	()	농어촌지역(읍·면)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 소재지 중·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동시에 중·고등학교 6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·모 모두가 농·어촌 (읍·면)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
	2	()	농어촌지역(읍·면)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지역 소재지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동시에 본인이 농·어촌 (읍·면)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12년간 거주한 자

재학 사실	학 교 명	소 재 지			재 학 기 간			
	초등학교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부터	년	월까지
	초등학교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부터	년	월까지
	중학교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부터	년	월까지
	중학교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부터	년	월까지
	고등학교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부터	년	월까지
	고등학교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부터	년	월까지
	고등학교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부터	년	월까지

거주 사실	구 분		소 재 지			거 주 기 간					
	지원자	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	부터	년	월	까지
		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	부터	년	월	까지
		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	부터	년	월	까지
	※ 유형1 해당자만 작성	부(父)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	부터	년	월	까지
		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	부터	년	월	까지
		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	부터	년	월	까지
		모(母)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	부터	년	월	까지
		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	부터	년	월	까지
			도(시)	군	읍(면)	년	월	부터	년	월	까지

※ 유의사항 : 구비서류는 2페이지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위 지원자는 서영대학교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로서 지원자격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

지원자 : (서명)

서영대학교 총장 귀하

★ **농어촌 지역 인정 범위**

-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 지역(도·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읍·면 포함). 다만, 농·어촌 소재 고등학교졸업 후 또는 재학 중 읍·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이된 경우는 농·어촌 지역으로 간주함
-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
- 검정고시 출신자, 농·어촌 및 도서·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교, 외국어고, 국제고,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는 제외됨

★ **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**

- 2개 이상의 초·중·고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되 동일한 농어촌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자격이 있음
- 초·중·고교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등본상 무단전출,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된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격이 없음
- 초·중·고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·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초·중·고교 재학 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·면 지역으로 인정함
- 지원자의 거주지, 부모의 거주지, 재학한 초·중·고교 소재지가 동일한 농어촌지역이 아니어도 지원자격이 있음
- 소년·소녀 가장 가정의 학생이 농어촌 학생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도 동 전형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함
-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에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
- 부모의 사망, 이혼 등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

구분	기준
부모의 사망·실종	• 부모 중 일방이 사망(실종)인 경우, 법률상 사망일(실종일)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• 부모 양방이 사망인 경우, 법률상 사망일(실종일) 이후부터는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
부모의 이혼	•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•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(자녀교육권)을 가진 자
입양자	•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•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(자녀교육권)을 가진 자
기타	•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- 부모 중 일방이 장기여행·중병·심신상실·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- 피성년 후견인 ·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- 친권행사 금지 가처분, 친권상실 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

★ **제출서류**

유형	제출서류
유형 1	필수
	필수
	필수
유형 1	해당자만
	제출
	제출
유형 2	필수
	필수
	필수

※ 지원자격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

※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정기한 내 해당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